

의안번호	2113157
의 퇴 인	박성민의원
회 답 일	2021.07.26.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□ 자금 등의 지원(안 제8조)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용자*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

* “사용자”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(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)를 말함(법 제2조제4호)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III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 효율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가능함

-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사용자 수 및 평균 지원금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,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사용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선언적·권고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향후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- 추가재정소요 = $\sum_{t=2022}^{2026} [\text{지원대상자 수}_t \times \text{지원단가}_t]$

-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자는 총 3,252,320세대 및 939개 사업체임

[표 1]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및 공급현황

구분		사업자수	사업장수	허가현황		공급현황	
				세대수	업체수	세대수	업체수
지역냉난방	공급중	31	61	3,992,805	—	3,157,908	—
	건설중	1	1	73,204	—	—	—
	계	32	62	4,066,009	—	3,157,908	—
산업단지	공급중	39	41	—	882	—	870
	건설중	4	4	—	61	—	—
	계	43	45	—	943	—	870
병행	공급중	6	6	149,585	77	94,412	69
	건설중	1	1	—	8	—	—
	계	7	7	149,585	85	94,412	69
총계	공급중	76	108	4,142,390	959	3,252,320	939
	건설중	6	6	73,204	69	—	—
	계	82	114	4,215,594	1,028	3,252,320	939

주: 2019년말 기준

자료: 「2020 집단에너지사업 편람」, 한국에너지공단

- 참고로, 현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허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비 용자지원 사업이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되었으나, 2009년에 동 사업 종료 후 현행 규정에 따른 별도의 지원사업은 없음

※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비 용자지원 사업

- 지원기간: 1985~2009년(총 28,983억원 용자)
- 지원비율 총사업비의 80% 이내
- 용자조건: 8년 거치 7년 분할상환

[표 2]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비 용자지원(1985~2009)

(단위: 억원)

연도	'85~'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합계
금액	14,069	1,611	1,731	1,495	1,622	1,870	1,831	1,955	1,299	1,000	500	28,983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국회예산정책처	경제비용추계과
과	장 이유미
추계세제분석관	김계남
연 락 처	02-6788-4650
	godself@nabo.go.kr
